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6. . (제회)	

주차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6.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 공급 확대('26.5.26, 대책발표)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을 준주택으로 용도전환 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 한시(∼'27.12) 면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하거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한시적 면제(안 제6조 제4항 제3호 개정)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1·2종)을 30m² 미만 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전환 시 주차장 확보 의무 한시적(∼'27.12) 면제

나. 공공 주차장 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 금지 기간 규정(안 제3조 개정)

국가기관의 장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

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6 제2호 가의1 개정, 가의2, 가의3 신설)

「주차장법」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차한 경우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라. 인용 조항 정비(안 제12조의5제2항, 별표1 제5호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중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인용 근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지원 근거 조문을 현행 법률에 따라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전
- 3) 행정규제 : 비규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을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계속하여 주차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본문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세대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와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제19조의13제4항”을 “제19조의13제6항”으로 한다.

별표1 제5호의 설치 기준에서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6 제2호의 위반행위 가목을 “가의1”로 하고 “가의1”에서 “법 제6조의3”을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가의2, 가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u>가의1.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u>	법 제30조 제3항제1호	30	40	50
<u>가의2.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경우</u>	법 제30조 제2항제1호	30	50	100
<u>가의3.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u>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00	300	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3조(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계속하여 주차할 수 있는 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 ----- ----- --.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삭 제>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생략)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세대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생략)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생략)

2.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생략)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가. -----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 ----- -- 제19조의13제6항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식산업센터 등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제3호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6의 가의2 및 가의3목의 신설 규정은 2026년 8월 28일 이후 같은 목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3814